

	책임감 있는 공급망 정책 <i>Responsible Supply Chain Policy(RSCP)</i>	표준번호	GM-L-8-C-01
		개정번호	02
		개정일자	2026.03.23

1. 정책 목적 및 적용범위

1.1 목적

당사는 OECD 「OECD 책임 있는 광물 공급망 실사 지침(Annex II 모델 공급망 정책 포함)」 및 Responsible Minerals Initiative 의 RMAP 요구사항에 따라 분쟁지역 및 고위험지역(CAHRA)에서의 책임 있는 광물 조달을 보장하고, 인권침해·분쟁자금 지원·부패·자금세탁 등의 위험을 예방·완화하기 위하여 본 정책을 수립한다.

1.2 적용범위

- 본 정책은 당사의 모든 임직원 및 모든 직접·간접 공급업체에 적용한다.
- 당사가 조달·거래·가공·판매하는 모든 해당 광물에 적용한다.
- 본 정책은 회사 웹사이트에 공개하며, 모든 직접 공급업체에 공식 통보한다.

1.3 발효

- 발효일: 2019 년 01 월 18 일
- 연 1 회 이상 검토 및 필요 시 개정

2. 책임 있는 조달 원칙

당사는 다음 행위를 용인하지 않으며, 관계 단절 등의 조치를 취한다.

1. 광물 채굴, 운송 또는 거래와 관련된 중대한 인권 침해
 - 고문, 잔혹하고 비인도적이며 굴욕적인 대우의 모든 형태
 - 강제 또는 의무 노동의 모든 형태
 - 최악의 형태의 아동 노동
 - 광범위한 성폭력과 같은 기타 중대한 인권 침해 및 남용
 - 전쟁 범죄 또는 기타 국제 인도법의 심각한 위반, 반인도적 범죄 또는 집단 학살
2. 비국가 무장 단체에 대한 직간접적 지원
3. 공공 또는 민간 보안군에 대한 직간접적 지원
4. 뇌물 수수 및 광물 원산지의 허위 표시
5. 자금 세탁
6. 정부에 대한 세금, 수수료 및 로열티 미납

	책임감 있는 공급망 정책 <i>Responsible Supply Chain Policy(RSCP)</i>	표준번호	GM-L-8-C-01
		개정번호	02
		개정일자	2026.03.23

7. 광부, 직접 및 간접 직원의 신체적, 정신적 건강을 유지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산업 보건 및 안전 조건

당사는 분쟁 무관 지역에서도 동일한 책임 있는 조달 원칙을 적용하며, RMAP 적합 제련소/정련소를 우선적으로 선택한다.

3. OECD 5 단계 실사체계 이행 약속

당사는 OECD 5 단계 실사체계를 전면 이행한다.

1. 강력한 관리시스템 구축
2. 공급망 위험 식별 및 평가
3. 위험 관리 전략 수립 및 이행
4. 독립적 제 3 자 검증 촉진
5. 실사 결과 공개 보고

4. 내부 관리 시스템

4.1 조직 및 책임

- 최고경영진은 공급망 실사관리시스템에 대한 최종 책임을 가진다.
- 실사 총괄 책임자를 지정한다.
- 품질·구매·영업·생산 기타 관련 부서의 역할과 책임(R&R)을 문서화한다.
- 공급망 실사 시스템의 효과성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위험평가 결과는 정기적으로 경영진에 보고한다.

4.2 자원 배정

- 실사 운영을 위한 충분한 인적·재정적 자원을 배정한다.
- 관련 직원 대상 **연 1 회 이상 정기 교육**을 실시하고 기록을 보관한다.

4.3 기록 보관

- 모든 관련 문서 및 기록을 **최소 5 년간 보관**한다.

4.4 시스템 평가

	책임감 있는 공급망 정책 <i>Responsible Supply Chain Policy(RSCP)</i>	표준번호	GM-L-8-C-01
		개정번호	02
		개정일자	2026.03.23

- 연 1 회 이상 실사 시스템 효과성을 내부 평가한다.

5. CAHRA 식별 절차

5.1 CAHRA 정의

CAHRA(Conflict-Affected and High-Risk Areas)는 일반적으로 분쟁지역 및 고위험 지역으로 OECD 정의에 따라 다음 위험을 포함하는 지역을 의미한다:

- 무력분쟁
- 취약한 거버넌스
- 광범위한 인권침해

5.2 필수 포함 국가

- [Democratic Republic of the Congo](#) 및 [인접 9 개국 \(Dodd-Frank 1502 대상국\)](#)
- [EU 규정 2017/821 CAHRA 리스트](#)

5.3 판단 기준

CAHRA 최종 결정 프로세스는 분쟁, 거버넌스, 인권의 세 가지 기준 범주를 사용하고, 각 범주에 대해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신뢰할 수 있는 자원을 최소 하나 이상 참조한다.

참고 자원:

- [United Nations 보고서](#)
- [World Bank 거버넌스 지표](#)
- [Transparency International CPI](#)
- [European Commission CAHRA 리스트](#)
- [Responsible Minerals Initiative 자료](#)

5.4 접근방법

당사는 CAHRA 최종 결정 시 **국가 전체 접근법**¹⁾을 기본으로 채택한다.

국가 하위 수준 접근법²⁾을 채택할 경우 객관적 근거를 확보하며, 인위적 위험 제거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.

	책임감 있는 공급망 정책 <i>Responsible Supply Chain Policy(RSCP)</i>	표준번호	GM-L-8-C-01
		개정번호	02
		개정일자	2026.03.23

- 1) **국가 전체 접근법**은 “특정 지역 문제가 아니라 국가 구조 자체가 고위험 상태”일 때 적용되는 판단 방식임.
- 2) **국가 하위 수준 접근법**은 특정 지역·주·광산 단위로 세분화하여 판단하는 방법임.
 - 국가 하위 수준 분석을 수행하는 경우 일관성 있고 객관적인 근거(예: 공급망 지도, 신뢰할 수 있는 지역 보고서)를 제시해야 하며, 인위적 위험 제거(Artificial De-risking: 실제 위험은 존재하지만 분석 단위를 쪼개거나 기준을 조정해서 CAHRA 가 아닌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행위)를 목적으로해서는 안된다.

5.5 동일 기준 적용

원산지 국가와 운송(Transit) 국가를 평가할 때, 서로 다른 기준을 임의로 적용하지 않고, 동일한 정보 출처(자원)와 동일한 판단 기준선(임계값*)을 적용한다.

* **임계값(Threshold)** : ‘어디부터 고위험인가’를 숫자·등급 등으로 명확히 정의해야 한다는 의미

5.6 검토 및 업데이트

- 연 1 회 이상 CAHRA 목록 검토
- EU 등에서 제시하는 CAHRA 리스트 개정 시 즉시 반영
- 최종 식별 국가·지역을 공식 기록

6. 공급망 통제 및 투명성 시스템

6.1 상류 행위자 식별

- 제련소/정련소 수준까지 식별 가능한 시스템 구축
- Red Flag 검토(OECD 실사 지침 Step2: 공급망 리스크 식별 및 평가) 수행

6.2 원산지 추적

- 계약서에 원산지 정보 제공 의무 명시
- 입고 시 원산지 검토
- 물질수지 평가 수행

6.3 현금거래 통제

	책임감 있는 공급망 정책 <i>Responsible Supply Chain Policy(RSCP)</i>	표준번호	GM-L-8-C-01
		개정번호	02
		개정일자	2026.03.23

- 현금 거래 지양
- 불가피 시 위험평가 및 문서화

6.4 물질 원산지 및 인력 정보 미제공 공급업체 대응

- 독립적 제 3 자 평가 요구
- 위험 완화 계획 수립
- 개선 미이행 시 거래 중단 검토

7. 공급업체 협력 및 계약 관리

7.1 계약 반영

모든 직접 공급업체 계약서에 다음 포함:

- 당사 공급망 정책 준수 의무
- OECD 실사 이행 요구
- 제 3 자 검증 협조 의무

7.2 장기 협력

- 단기 거래 지양
- 지속적 개선 중심 장기 협력 지향

7.3 역량 구축

- 공급업체 대상 교육·기술지원
- 수행 기록 유지

7.4 외부 이해관계자 협력

- 지방정부·시민사회 등과 협력하여 개선계획 수립 가능

8. 불만 처리 메커니즘

8.1 제보 채널 구축

	책임감 있는 공급망 정책 <i>Responsible Supply Chain Policy(RSCP)</i>	표준번호	GM-L-8-C-01
		개정번호	02
		개정일자	2026.03.23

- 익명 제보 가능
- 보복 금지 원칙 명문화
- 당사의 정책 또는 실사 시스템에 대한 우려 사항은 아래 링크에서 고충 처리 메커니즘을 통해 책임 있는 광물 이니셔티브에 직접 보고할 수 있습니다.
(<http://www.responsiblemineralsinitiative.org/minerals-due-diligence/risk-anagement/grievance-mechanism/>)

8.2 조사 절차

- 접수 → 조사 → 시정·예방조치 → 결과 기록
- 실사 프로세스에 통합

8.3 지속 개선

- 제보 데이터는 위험 식별 단계에 반영

9. 공개 및 보고

- [공급망 실사 활동 및 결과를 공개 보고](#)
- RMAP, 고객 요구 및 관련 규제에 부합하도록 정보 제공